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3-30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 계약등기(신용카드)의 신규 표준요금 적용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맞춤형 계약등기(신용카드)의 신규 표준요금 적용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개요

맞춤형 계약등기(신용카드)의 동의서 첨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준요금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제도

2. 서비스내용

- 가. 이용대상 : 맞춤형 계약등기의 ‘신용카드(동의서 첨부)’ 우편물
- 나. 제공서비스 및 표준요금

종별		제공서비스	표준요금
신용카드	동의서 첨부 2형	방문접수, 배달, 동의서 서명을 받아서 발송인이 지정한 기관에 회송 * 표준요금에 ‘본인지정배달’ 및 ‘회신우편’ 요금 포함	3,400원

* 현행 맞춤형 계약등기(신용카드, 3,600원)는 위 서비스 외에 접수국에서 동의서 출력·첨부 및 배달된 동의서를 종합·정리하여 발송인에게 통보 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함

다. 요금 적용 : 100g까지는 해당 표준요금을 적용하고 100g 초과 시마다 국내통상 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추가

라. 이용방법 : 총괄우체국(집중국 포함) 및 5급 우체국과 별도의 계약 체결 후 이용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